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보도자료]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날 짜 2015. 1. 25. (총 21 쪽)

보 도 자 료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점검시기, 점검내용 통보해도 감독대상업체 대비 위반건수 50% 육박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로감독 결과 공개 필요해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업체,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상시노동자의 대략 40%는 비정규직이고 근로감독 대상 업체 1,181개소에서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

- 서울고용노동청(청장 임서정)은 오는 5.1.부터 6.30.까지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3대 기초 고용질서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일제점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소지가 많은 영세·취약 사업장 위주로 실시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임금체불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예정사업장(실제 점검사업장의 3배수)에 대해서는 지난 4.24.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문으로 안내하여, 사업장이 범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스스로 개선토록 한 바 있다.
- 점검결과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준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한 내에 시정토록 한 후 미시정시에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나,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1) 출처: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

2015년 5~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기초 고용

질서 일제점검 실시' (이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업체 전체 1,181개소에서 총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2> 위반건수와 고용형태 별 노동자 수

<단위: 개소, 건, 명>

감독대상업체	상시노동자(a+b)			단시간노동자	청소년노동자
	시정지시*	정규직노동자(a)	기간제노동자(b)		
1,181	545	10,169	5,934	4,235	3,969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당 전체 위반을 시정지시 라고 설명함.

1) 전체 노동자 수는 상시노동자+단시간노동자+청소년노동자 임.

2. '감독대상업체에게 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점검내용 등을 통보한 후 선별적으로 점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점검방식을 고려해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감독대상업체에 대비한 시정지시 건수(<표2> 참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표3> 점검방식과 절차 등

점검 시기 및 물량

○ 감독시기: 5.1. ~ 6.30.

○ 감독물량: 265개소 (근로감독관 1인당 5개소, 별첨1)

구 분	합계	지도1과	지도2과	지도3과	지도4과
감독관수	53	13	13	14	13
점검물량	265	65	70	65	65

* 광역근로감독과, 상황실, 관리구제지원팀장 제외(4월말 현재 기준)

○ 감독방법: 수시·부분점검(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부문)

○ 감독절차: 점검 예비사업장 풀구성(관내 795개소) →점검안내공문 발송(4.24.발송완료)

* ① 예비 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 점검 항목 ④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 관련 규정 설명 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1) 출처: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표1〉 참고, 별첨자료2 참고)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 질서 일제점검 계획>(〈표3〉, 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은 ①근로감독 실시 전에 ‘점검예비사업장’ 을 선정하여 ②선정된 업체에 ‘점검안내공문’ 을 발송한 뒤 ③점검예비사업장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예비사업장에 발송한 점검안내공문(별첨자료3 참고)에는 ①해당 업체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②진행될 근로감독의 시기와 점검 항목에 대한 공지 ③점검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처벌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체는 ①자신이 지켜야 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② ‘부족하지 않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적발된 위반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3. 감독대상업체는 상시노동자 10,169명 중 대략 41.5%에 해당하는 4,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181개소 업체에서 3,969명의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표2〉 참고)

‘알바’ 는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이므로 비정규직이거나 단시간일자리인 것이 당연한 듯이 인식되곤 하지만, 현실에서 소위, ‘알바’ 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취약계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업체나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그 어떤 일자리도 당연히 비정규직이어도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4.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소위, ‘깍기’ 등 이 다수 적발되었다(〈표4〉 참고).

근로감독 실시 전 ①예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

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점검항목 ④근로조건외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관련 규정 설명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등을 점검예비사업장에게 공지한 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근로감독 방식에 있다.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적발된 위반에 대해 ‘즉시 처벌’ 하지 않고 우선, ‘시정권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식은 사용자에게 평소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기보다 적발된 이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사항의 적발 즉시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4> 점검결과: 임금 관련

<단위: 명, 원>

임금 관련 위반 전체(a+b+c)							
		근로기준법 36조*(a)		근로기준법 43조**(b)		최저임금 미달지급액(c)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790	248,568,305	174	52,584,916	502	154,194,546	114	44,408,759

*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①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소위, ‘꺼기’와 ②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점검내용(<표5> 참고)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아직도 패스트푸드업체와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임금과 관련한 불·편법적인 관행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5> 임금 관련 점검범위

- 특히,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격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
 - (금품청산(법 제36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등 금품지급 여부
 - (임금 정가지불 원칙 위반 등(법 제43조)) 월 1회 임금정기지급일을 정하고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였는지 여부
 - 임금 유보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는지 여부

< 위반 유형 >

- ① 사업주 지배 하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거나 강제조퇴 후 일방적 임금 삭감(일명 “격기”)
- ② 주 6일 1일 8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만큼 임금 미지급

⇒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령하지 않은 근로시간 부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지급 관련 지침시달, 근로개선정책과-5425, 2014.10.2.)

1) 출처: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5. 이번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다.

<표6> 점검결과: 근로계약서 관련

<단위: 명, 원>

근로기준법 17조(f+g+h)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17조(m+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17조(m+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17조(m+n)		과태료*
	미작성(f)	작성 후 미교부(g)	작성이나 일부누락(h)		미작성(m)	작성 후 미교부(n)	
886	206	113	567	103	19	84	57,000,00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4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 1) 근로기준법 제67조(연소자 서면근로계약) 더 했으나 적발된 위반건수 없음.

「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

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이하 기간제법)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이나 단시간노동자와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을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으로 규정화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는 근로감독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으나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감독 대상업체의 확대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 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중요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목적을 청년·청소년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정하더라도 ①사실상 임금에 한정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 상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②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을 홍보해야 한다.

7. 위 자료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이다. 2015년 5~6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

구’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 4호(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②동법 9조1항5호(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 했다. 그러나 일부 지청에서는 근로감독 종료 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별첨자료4 참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 ▣ 별첨자료: 1.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 >
3. 2015.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중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4. 2015.08.20.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별첨자료 1>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015.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I 추진 배경

□ 그간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

- (서면근로계약) 전년대비 취약 업종 및 직종별, 연령대별 체결율이 증가*, 근로조건 명시 관련법 위반 사업장도 크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 개선요구

< 취약 부문별 근로계약 서면 체결율 >

구분	전체	취약업종 (농림어업)	취약사업장규모 (1~4인)	취약연령대 (15~19세)	취약직종	
					서비스	판매
'13년도	55.4%	22.9%	24.6%	34.7%	36.2%	45.3%
'14년도	56.7%	25.9%	28.5%	35.0%	37.8%	46.7%

** 사업장 감독 결과 위반율: '12년 42.5% → 13년 45.9% → '14년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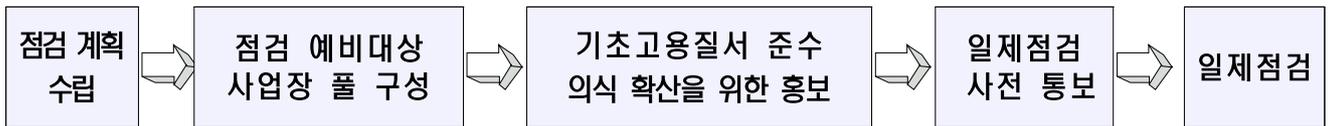
-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01년(4.3%)부터 '07년(11.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09년(12.8%) 이후 감소되었으나 '13년에 다시 상승(11.4% <2,086천명>)'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
- (임금체불) 매년 1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이로 인해 29만명에 넘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체불규모가 줄고 있지 않은 상황

- 이에, 청소년 고용사업장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15년 상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근로와 고용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

* 2차로 하반기 10월 경 실시 예정

II 점검계획

▶ 1. 점검 체계



▶ 2. 점검개요

□ 점검 시기 및 물량

- 감독시기: 5.1. ~ 6.30.
- 감독물량: **265개소** (근로감독관 1인당 5개소, 별첨1)

구 분	합계	지도1과	지도2과	지도3과	지도4과
감독관수	53	13	13	14	13
점검물량	265	65	70	65	65

* 광역근로감독과, 상황실, 권리구제지원팀장 제외(4월말 현재 기준)

- 감독방법: 수시·부분점검(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부문)
- 감독절차: 점검 예비사업장 풀구성(관내 795개소) →점검 안내공문 발송(4.24.발송완료)
 - * ① 예비 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 점검 항목 ④ 근로조건외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 관련 규정 설명 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 점검 대상 및 방식

- 본부에서는 4대 부문 20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개선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
 - ※ 5인이하 사업장, 취약연령대(15~19세) 다수 고용 사업장, 서비스·판매업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4대 부문 20개 취약분야 (별첨 2 참조) 선정
 - * ('15년 상반기) 편의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부문 → (하반기) 주유소, 미용실·음식업 부문 → ('16년 상반기) PC방 등 유흥·오락 부문 → (하반기) 백화점 등 유통 부문
- 이에따라 금년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청소년 고용 또는 최저임금 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15년 상반기 일제점검 대상 사업장

- ① 편의점
- ② 패스트푸드(맥도날드 8개소 포함)
- ③ 커피전문점
- ④ 제과제빵
- ⑤ 레스토랑(패밀리)

※ 위 5개분야 각 53개소씩 총 265개소 선정

2. 점검범위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 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에 한정하여 점검
 -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최저임금법 제6조에 한정
- 특히,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꺼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
 - (금품청산(법 제36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등 금품지급 여부
 - (임금 정가지불 원칙 위반 등(법 제43조)) 월 1회 임금정기 지급일을 정하고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였는지 여부
 - 임금 유보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

는지 여부

< 위반 유형 >

- ① 사업주 지배 하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거나 강제조퇴 후 일방적 임금 삭감(일명 “깍기”)
- ② 주 6일 1일 8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만큼 임금 미지급

⇒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령하지 않은 근로시간 부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지급 관련 지침시달, 근로개선정책과-5425, 2014.10.2.)

<붙임 2>

기초 고용질서 위반 우려 20개 취약분야

연번	부문	분야	점검 시기	비고
1	프랜차이즈 부문	편 의 점	2015년 상반기	
2		패 슥 푸 드		
3		커 피 전 문 점		
4		제 과 제 빵		
5		레스토랑(패밀리)		
6	주유소·미용실·음식업 부문	주 유 소	2015년 하반기	
7		미 용 실		
8		음 식 점		
9		배 달 업		
10	PC방·유흥·오락 부문	P C 방	2016년 상반기	
11		카 페		
12		주 점 · 호 프		
13		노 래 방 · 오 락 실 · 게 임 장		
14		당 구 장		
15		영 화 · 공 연 · 전 시		
16		숙 박 · 호 텔 · 리 조 트		
17	백화점 등 유통부문	백 화 점	2016년 하반기	
18		의 류 · 잡 화 · 쇼 핑 몰 · 아 울 렛		
19		대 형 마 트		
20		물 류 창 고		

<별첨자료 2>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

“일자리중심, 서울고용노동청”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15.5.1(금) 조간
<인터넷 4.30(목) 18:00 이후>
- ▶ 총 2 쪽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전해선
근로감독관 정수미

☎ 02-2250-5783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

- 서울고용노동청(청장 임서정)은 오는 5.1.부터 6.30.까지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3대 기초 고용질서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일제점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소지가 많은 영세·취약 사업장 위주로 실시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임금체불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예정사업장(실제 점검사업장의 3배수)에 대해서는 지난 4.24.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문으로 안내하여, 사업장이 법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스스로 개선토록 한 바 있다.

- 점검결과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준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시정토록 한 후 미시정시에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나,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임서정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만 잘 지켜도 노사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근로와 고용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3> 2015.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중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붙임 2>

고 용 노 동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알림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5월~6월 중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 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부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 사업장을 점검 예비대상으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점검계획을 사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실시기간: 2015.5.1.(금) ~ 6.30.(수)

※ 다만, 본 점검은 점검예비대상 중 선별하여 실시하므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점검 내용: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7조(제67조), 제36조 및 제43조, 최저임금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 사업주 준비사항: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

류,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3.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초 고용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끝.

<붙임 2-2>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1 임금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현금(통장이체 가능)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 공제는 불가능)
-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일한 일수/365일
 - ☞ 퇴직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 퇴직금 계산)

✓ 위반시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서면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와 그 밖에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2012년부터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이를 교부해야 하며 서면근로계약 체결 내

용 및 위반시 벌칙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 명시) 내용 및 위반시 벌칙 등>

구분	서면명시 대상	벌칙	조치기준
일반 근로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500만원 이하 벌금	14일 이내 시정, 미시정시 사법처리
기간제 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계약기간, 장소·종사업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단시간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일별 근로시간		

3 최저임금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만큼의 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첨자료 4> 2015.08.20.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 보도일시: 2015.8.20.(목) 오전
<인터넷 8.20(목) 12:00 이후>
- ▶ 총 2쪽

◇ 근로개선지도1과 과장 강요원
근로감독관 윤재신
☎ 032-460-456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jungbu/>(알림의 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 1,301개소 점검, 460개소 범위반사항 적발·시정조치 -

- 중부고용노동청(청장 하미용)과 인천·경기도 내 9개 지청은 '15. 5월부터 7월말까지 편의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부문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은 임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 특히,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 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부분에 대해 집중 감독을 전개하였다.
- 점검 대상 사업장은 1,301개소로 주요 범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 460개 사업장(35.3%)에서 임금체불 등 60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는데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금품체불이 237개소(18.2%)에서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준수 의무 위반이 221개소(16.9%) ▲ 최저임금 위반이 25개소에서 적발되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기한 부여 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려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등에 대하여는 즉시 금품을 청산토록 지도하였다.
- 이와 관련 하미용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고 동종업계에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며,
- 하반기에도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배달업 등 4개 업종과 최저임금 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고용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1과 윤재신 근로감독관(☎ 032-460-45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